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교육위원회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되는 주 및 연방 법 그리고 규정 준수를 확실히 하도록 일차적 책임이 교육구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교육위원회는 가능한 한 언제라도 조기에 불만을 해결하도록 장려한다. 보다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는 불만 해결을 위해 교육위원회는 민사 소송법 타이틀 5 CCR 제 4600-4670 조항 및 관련 행정 규정에 명시된 일관적 불만 처리 시스템을 채택해야 한다.

UCP 에 적용되는 불만제기 사항들 :

교육구의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UCP)는 다음과 같은 불만 사항들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1. 성인 교육; 방과 후 교육 및 안전 프로그램; 농업 직업 기술 교육; 통합된 카테고리칼 보조 프로그램 ; 연방 직업 기술 교육; 탁아 및 발육 프로그램; 보충 교육; 모든 학생의 성공을 위한 연방법, 이주자 교육; 리지날 직업 센터 및 프로그램;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안; 학교 안전 계획안; 캘리포니아 주정부 유아원 프로그램; 지방 교육 기관의 면허 취득을 면제받은 주정부 유아원 보건 및 안전 문제; 및 교육법 64000(a)에 준하여 지방 콘트를 기금 포물라를 통해 지원되지 않는 기타 교육구가 실시하는 모든 주정부 카테고리칼 프로그램 운영에 적용되는 주 또는 연방 법 또는 규정에 관한 교육구의 위반을 주장하는 불만제기.
2. 교육구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학생, 직원 또는 기타 참여인이 그 사람의 인종 또는 민족의 실질적 또는 인지된 특성, 피부색, 조상, 국적, 출신 국가, 이민 신분, 민족 그룹 정체성, 나이, 종교, 혼인 여부, 임신 또는 혼인 상태,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 의료 상의 문제, 성, 성적 지향, 성별, 성별적 정체성, 표현 또는 유전학적 정보 또는 교육법 200 이나 220, 행정법 11135 또는 형법 422.55 에 인지된 특성 또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실질적이거나 인지된 특성을 갖는 사람이나 그룹과의 관계에 기초한 주정부 재정 지원으로 기금을 직접 받거나 혜택을 받는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 불법적인 차별(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악자 괴롭히기)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불만제기. (5 CCR 4610)
3. 학교 교정에서 모유 수유, 유아 모유 수유, 또는 기타 모유 수유와 관련된 학생의 필요 해결을 위해 수유 중인 학생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할 요건에 대한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222)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4. 육아 휴직 규정, 이전 등록 학교로의 복귀 권리 또는 원하는 경우, 대안 교육 프로그램 및 학생이 주정부 및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졸업 요건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학교에 5년차 등록 가능성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법 46015 에 명시된 임신 또는 육아 학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46015)
5. 교육 활동 참여를 위해 학생에게 비용, 보증금 또는 기타 요금 부과 금지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5 CCR 4610)
6. 학부모/후견인을 위한 지방 콘트롤 기금 포물라 예산 개요 수립을 포함하여 지방 콘트롤 및 책무안 (LCAP) 의 실시와 관련되어 적용되는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52075)
7. 특정 연방 및/또는 주정부 카테고리칼 기금을 위해 통합 신청서에 요구된 바와 같이, 학생 성취를 위한 학교 계획안 수립 또는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교육법 64000-664001, 65000-65001)
8. 교육법 51225.2 에 정의된 위탁 청소년 학생 또는 그 학생을 대신하여 학생의 배치 결정; 교육과 관련하여 학생과의 연락을 담당할 사람에 대한 교육구의 책임; 다른 학교, 교육구 또는 국가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학업 코스에 대한 학점 부여; 학교 또는 기록 이전; 또는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졸업 요건 면제 부여에 관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9. 미 합중국 법 42 (42 USC) 11434a 조항에서 정의된 대로 고등학교 2년 이후 교육구로 전학 온 학생으로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 교육법 49701 에 정의된 과거 청소년 법원 보호 학교 학생으로 최근에 교육구에 등록된 학생, 군인 가정의 아동 또는 교육법 54441 에 정의된 이주 노동자 학생 또는 교육법 51225.2 에 정의된 뉴커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 학생으로 고등학교 3년에 또는 4년에 교육구로 전학 온 학생을 대신하여 또는 학생 당사자가 교육위원회가 도입한 졸업 요건 면제 부여에 대해 학생에게 적용되는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51225.1)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10. 미 합중국법 42 (42 USC), 11434a 조항에 정의된 노숙 아동 또는 청소년 학생, 교육법 49701 에 정의된 과거 청소년 법원 보호 학교 학생, 군인 가정의 아동, 교육법 54441 에 정의된 이주 노동자 학생 또는 교육법 51225.2 에 정의된 뉴커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 학생으로 다른 교육구 또는 국가에서 만족스럽게 이수한 교과목 학점에 대한 학점 인정에 대한 요건에 관해 학생을 대신하여 또는 학생 당사자가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51225.2)
11. 어느 학기에서 한 주 이상 학과 내용에 대한 교육없이 또는 지정된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고 이전에 만족스럽게 완료한 과정에 9-12 학년 학생의 배정을 금지하는 교육법 51228.1 및 51228.2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제기. (교육법 51228.3)
12. 최소한의 체육시간(분수)의 요건에 관해 교육구의 비 준수를 주장하는 불만 제기.(교육법 51210, 51223)
13. 보건 및 안전 법 1596.7925 및 관련 주 규정에 명시된 면허가 면제된 캘리포니아 주 유아원 프로그램 (CSPP)의 보건 및 안전 표준 비준수에 관한 불만 제기.
14. 불만제기인이나 불만 처리 절차의 다른 참여자 또는 본 방침과 관련된 위반을 발견하였거나 보고를 한 사람에게 대한 보복이 있었다는 주장의 불만제기.
15. 교육구 방침에 명시된 기타 불만제기.

교육위원회는 주장의 본질에 따라 대안적 분쟁 해결 (ADR)이 당사자 모두가 수용 가능할 수 있는 방식으로 불만을 해결하는 절차를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중재와 같은 ADR 절차는 한 명 이상의 학생 그리고 어떤 성인도 포함되지 않은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이 포함된 불만제기 또는 어느 당사자가 중재에 참여하도록 강요되는 합리적인 위험 요소가 있는 경우, 불만 해결을 위해 중재를 제안하거나 사용될 수 없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ADR의 사용이 주 및 연방 법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교육구는 보복으로부터 모든 불만제기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불만에 대한 조사에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비밀은 법으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보호되어야 한다. 보복 또는 불법적인 차별 (예를 들어, 차별적 희롱, 협박, 또는 약자 괴롭히기)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에 대해,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불만제기인의 신원 및/또는 불만제기 주체가 해당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불만제기인과 다른 경우, 적절한 경우 그리고 불만 처리의 원래 모습이 유지되는 한, 관련인의 신분은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UCP 에 해당되지 않는 주장이 UCP 불만 제기에 포함된 경우, 교육구는 비-UCP 주장을 적절한 직원 또는 기관에 의뢰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 교육구 UCP 를 통해 UCP-관련 주장을 해결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본 방침에 명시된 단계와 일정 그리고 수반되는 행정 규칙들을 포함하여 UCP 와 관련된 현재의 법률 및 요구 사항들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을 보장하기 위해 교육구 직원에게 훈련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감 또는 대리인은 5CCR 4631 및 4633 준수에 요구되는 조사 동안에 취한 조치 및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각 불만제기 및 관련된 후속 조치의 기록을 보관(유지)해야 한다.

비-UCP (UCP 에 해당되지 않는) 불만제기

다음의 불만제기들은 교육구 UCP 에 저촉되지 않지만, 그러나 특정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5 CCR 4611)

1. 아동 학대 또는 방치를 주장하는 불만 제기는 카운티 사회 복지부(County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보호 서비스 부서(Protective Services Division) 및 적절한 법집행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2. 허가된 시설물에서의 아동 발달 프로그램이 보건 및 안전을 위반했다는 주장의 불만 제기는 사회 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에 의뢰하고, 허가가 면제된 시설물에 대해선 적절한 아동 발달 지역 행정관(Child Development regional administrator)에게 의뢰해야 한다.
3. 부정 행위(사기)를 주장하는 불만 제기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의 법률, 감사 및 준수 부서에 회부되어야 한다.

합의안이 개별 교육 프로그램에 통합되지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합의안에서 요구되는 서비스에 근거한 적절한 무상 공립 교육 거부를 주장하는 특수 교육 불만 제기는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의해 조사되어야 한다(5CCR 3080, 3200-3204; 교육법 섹션 33315(a)(2))

급식 계산, 상환할 수 있는 급식 그리고 아동 및 성인의 자격과 관련된 아동 영양에 관한 불만 제기는 5CCR 섹션 15580-15584 에 명시된 대로 캘리포니아 주 교육부에 의해 직접 조사되고 응답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고용 차별 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 불만 제기는 캘리포니아 공정 고용 및 주택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권리를 포함하여 행정 규정(AR) 4030 - 고용 차별금지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교육구에 의해 조사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교과서 또는 학습 자료물의 충분성, 학생 또는 교직원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응급 또는 비상 시설물들의 상태, 교사 결원 및 오배치와 관련된 불만 제기는 AR 1312.4 - 윌리엄스 일관적 불만제기 절차에 따라 조사하고 해결해야 한다. (교육법 35186)

지역사회와의 관계

일관적 불만 제기 절차

법적 참조: 교육법 섹션 200-262.4; 8200-8498; 8500-8538; 18100-18203; 32280-32289; 33380-33384; 35186; 44500-44508; 46015; 48853-48853.5; 48985; 49010-4901; 49060-49079; 49069.5; 49490-49590; 49701; 51210; 51223; 51225.1-51225.2; 51226-51226.1; 51228.1-51228.3; 52060-52077, 52075; 52160-52178; 52300-52462; 52500-52616.24; 54000-54029; 54400-54425; 54440-54445; 54460-54529; 56000-56865; 59000-59300; 64000-64001; 65000-65001
정부법 섹션 11135; 12900-12996
보건 및 안전법 섹션 104420
형법 422.55; 422.6, 타이틀 2, 섹션 11023
규정법, 타이틀 5, 섹션 3080; 4600-4687; 4900-4965
미합중국법, 타이틀 20, 섹션 1221; 1232g; 1681-1688; 6301-6576; 6801-7014; 7101-7184; 7201-7283g; 7301-7372; 12101-1221
미합중국법, 타이틀 29, 섹션 794
미합중국법, 타이틀 42, 섹션 2000d-2000e-17; 2000h-2-2000h-6; 6101-6107
연방 규정법, 타이틀 28, 섹션 35.107
연방 규정법, 타이틀 34, 섹션 99.1-99.67; 100.3; 104.7; 106.8; 106.9; 110.25

방침 채택: 11/17/1992
방침 개정: 12/17/2002; 11/03/2010; 03/11/2014; 04/15/2014; 05/06/2014;
04/05/2016; 10/18/2016; 08/15/2017; 02/06/2018; 05/01/2018;
06/04/2019; 07/14/2020

(이전 BP 1312)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교육위원회가 기타 교육구 정책에서 별도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통합 민원 절차(UCP)가 BP 1312.3에 명시된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데 사용된다.

준법 감시인

교육구는 민원에 관한 교육구의 답변을 조정하고 주와 연방 인권법안을 준수할 책임이 있는 아래에 명시된 개인(들), 직책(들), 단체(들)를 지명한다. 또한 지명된 개인(들), 직책(들), 단체(들)는 AR 5145.3 즉, 불법 차별(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에 관한 민원을 다룰 책임이 있는 차별금지/가해행위에 명시된 준법 감시인의 역할을 수행한다. 준법 감시인은 민원 관련 조사를 받아 조정하며, 법에 따라 지역구의 명령을 수행해야 한다.

부교육감 Kelly King 박사 – 교육 서비스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내선번호 1208
kking@gusd.net

카테고리컬 프로그램 책임자 Lena Richter 박사
223 North Jackson Street
Glendale, CA 91206
(818) 241-3111, 내선번호 1457
lrichter@gusd.net

민원을 받은 준법 감시인은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다른 준법 감시인을 배정할 수 있다. 다른 준법 감시인이 민원에 배정되었다면, 해당하는 경우 민원인과 피 민원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준법 감시인이 민원과 관련하여 공정한 조사 및 해결을 저해하는 편견 혹은 이해의 충돌이 있는 민원에 배정되어서는 안 된다. 준법 감시인에 대한 불만 사항 혹은 편견 없이 공정하게 민원을 수사하는 준법 감시인의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 민원은 민원 조사 과정을 결정하는 교육감 혹은 지명인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교육감 혹은 지명인은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도록 배정한 직원이 훈련을 받고, 배정된 논쟁 중인 민원 관련 법률과 프로그램에 대해 정통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직원에게 제공된 훈련은 해당 주와 연방 법률과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규정, 혐의가 제기된 불법 차별(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을 포함하여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는 해당 절차, 민원 관련 결론에 도달하는 해당 기준, 적절한 시행 조치를 다루어야 한다. 배정된 직원은 교육감 혹은 지명인의 판단에 따라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준법 감시인 혹은 필요한 경우, 적절한 관리자가 도중에 혹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시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임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준법 감시인 혹은 관리자는 교육감 혹은 교육감 지명인과 의논하거나, 적절한 경우 한 가지 이상의 임시 대책을 시행할 현장의 교장과 의논해야 한다. 준법 감시인이 임시 대책이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까지 혹은 교육구가 최종 서면 결론을 발표할 때까지, 둘 중 어느 하나가 먼저 발표되든 임시 대책을 유지해야 한다.

안내문

교육구의 UCP 정책 및 행정 규제는 교육구 내 모든 학교와 사무실, 직원 휴게실, 학생회 회의실에 게시되어야 한다. (교육법 234.1)

또한, 교육감 혹은 지명인은 학생, 직원, 교육구 내 학생의 학부모/보호자, 교육구 자문위원회 회원, 학교 자문위원회 회원, 타당한 사립학교 임원 혹은 대표,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교육구의 UCP 관련 서면 안내문을 매년 제공해야 한다. (5 CCR 4622)

안내서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첨부한 위원회의 정책에서 “UCP에 해당하는 민원” 섹션에 명시된 UCP의 대상인 모든 보호 그룹, 모든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불법 차별,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의 금지 사항을 포함하여 연방 및 주 법률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전적으로 교육구에 있다는 내용
2. 민원인이 민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증거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수업료 혹은 교육구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LCAP) 관련 민원은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3. 공립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과정 및 과외 활동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교육 프로그램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교육 활동 참여에 대한 수업료를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
4. 수업료 관련 민원은 의심된 혐의 위반이 일어난 날로부터 늦어도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내용
5. 교육법 48853, 48853.5, 49069.5, 51225.1, 51225.2 및 민원 절차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교육구는 위탁 아동, 노숙 학생, 현재 교육구에 재학 중이지만 이전에 소년 법원 학교에 재학한 학생, 군인 가정 자녀, 이주 학생, 신입생 프로그램에 등록한 이민 학생의 교육 권리에 관한 표준 안내문을 게시할 것이라는 내용
6. 책임지고 민원을 받도록 지정된 직원(들), 직책(들), 단체(들)의 신분 증명 자료
7. 교육구의 UCP에 따라 민원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며, 민원인의 서면 합의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서면 결론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발송될 것이라는 내용
8. 교육구가 결론을 내린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민원인이 민원 원본과 교육구의 결론을 포함한 서면 항소서를 캘리포니아 교육부(CDE)에 제출함으로써 교육구의 결론에 항소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
9. 민원인에게 경고, 금지 명령 외에도 해당하는 경우 민법 해결책, 혹은 주와 연방 차별금지법에 따라 도움이 되는 기타 해결책 혹은 명령을 민원인에게 알리는 내용
10. 교육구의 UCP 사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준법 감시인의 연락처와 교육법 221.61에 따라 요구된 9장과 관련된 정보가 포함된 연례 안내문은 교육구의 웹사이트에 게시되어야 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교육구가 운영하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교육감 혹은 지명인은 영어 구사력이 낮은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를 포함하여 모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교육구의 UCP 관련 정책, 규정, 양식, 안내문에 제공되는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특정 교육구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15퍼센트 이상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할 경우, 교육법 234.1 및 48985에 따라 교육구의 UCP 관련 정책, 규정, 양식, 안내문은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 교육구는 영어 구사력이 낮은 학부모/보호자가 모든 UCP 관련 정보에 유의미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민원 제기

접수된 민원 기록을 보관해야 하는 준법 감시인에게 민원을 제출해야 하며, 코드 번호와 소인도 각각 제공해야 한다.

모든 민원은 서면으로 민원인이 서명하여 제기해야 한다. 민원인이 장애가 있거나 문맹이라는 이유로 서면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면, 교육구의 직원이 민원 제기를 도와야 한다. (5 CCR 4600)

또한 민원은 해당할 경우 다음 규정에 따라 제기되어야 한다.

1. 첨부한 위원회의 정책 ("UCP에 해당하는 민원" 섹션 1번)에 명시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규정 및 해당 주와 연방 법률에 대한 교육구의 위반 혐의가 있는 모든 민원은 모든 개인, 공공 기관, 단체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5 CCR 4630)
2. 불이행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와 증거를 제공할 경우, 수업료, 예치금, 청구금 혹은 교육구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 관련 모든 요건에 대한 금지 규정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에 대한 모든 민원은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다. 불법 수업료 청구 금지 위반 관련 민원은 학교 교장 혹은 교육감이나 지명인에게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심된 혐의 위반이 일어난 날로부터 늦어도 일 년 이내에 해당 민원을 제기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2075; 5 CCR 4630)
3.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 혐의 관련 민원은 불법 차별로 직접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혹은 불법 차별의 대상인 사람이나 특정 계급에 의해서만 제기될 수 있다. 민원은 혐의가 제기된 불법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늦어도 6개월 이내에 혹은 민원인이 혐의가 제기된 불법 차별 사실을 최초로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연장 사유를 기재한 민원인의 서면 요청 시 교육감 또는 지명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민원 제기 시기를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CCR 4630)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4.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 혐의 관련 민원이 익명으로 제기되었을 때, 준법 감시인은 제공된 정보의 특수성과 신뢰성, 혐의의 심각성에 따라 타당하게 조사하고 적절하게 기타 대응을 해야 한다.
5.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의 민원인 혹은 민원인이 아닌 피해 추정인이 비밀을 요청할 때, 준법 감시인은 민원인 혹은 피해자에게 교육구가 민원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 비밀 요청을 받아들인 경우일지라도, 교육구는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답변하는데 요청에 부합하는 타당한 조치를 해야 한다.

중재

민원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3일 이내에 준법 감시인은 중재가 필요한 모든 당사자와 비공식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중재는 어른이 아닌 한 명 이상의 학생이 연루된 민원을 해결하도록 제안된다. 하지만 중재는 성범죄 혐의가 있는 민원을 해결하거나, 중재 당사자가 참여하도록 강요받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 제안되거나 사용되지 않는다. 당사자들이 중재에 동의한 경우, 준법 관리인이 중재 과정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준비해야 한다.

보복 혹은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 혐의 관련 민원의 중재에 착수하기 전, 준법 감시인은 모든 당사자가 관련 기밀 정보에 중재인 참여를 동의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준법 감시인은 모든 당사자가 언제라도 비공식 과정을 끝낼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중재 과정이 법의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준법 감시인은 계속해서 민원 관련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민원인이 서면으로 기간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 한 중재 이용은 교육구의 민원 조사 및 해결 일정을 연장할 수 없다. 중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민원이 철회된 경우, 교육구는 중재를 통해 합의된 조치만을 취해야 한다. 중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교육구는 행정 규제에 명시된 차선책을 진행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준법 감시인이 민원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10일 이내에 준법 감시인은 민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

조사 시작일로부터 근무일 1일 이내에, 준법 감시인은 민원에 기재된 정보를 준법 감시인에게 제시할 기회를 민원인 혹은 민원 대리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민원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는 정보 및 증거를 준법 감시인에게 제시할 기회를 민원인 혹은 민원 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해당 증거 및 정보는 조사 중 언제라도 제시될 수 있다.

조사 수행 중에 준법 감시인은 모든 서류를 수집하고,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에게 받은 추가 증거 혹은 정보를 포함하여 민원과 관련된 모든 기록, 메모, 진술을 검토해야 한다. 준법 감시인은 민원과 관련이 있는 정보를 가진 모든 목격자를 개별적으로 면담해야 하며, 관련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입장할 수 있는 장소에 방문할 수 있다. 적절한 간격으로 준법 감시인은 조사 진행 상황을 양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혐의가 제기된 보복 혹은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 관련 민원을 조사하려면, 준법 감시인은 사적으로, 단독으로, 비밀로 피해 추정인, 위반 추정인, 기타 관련 목격자를 면담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추가 직원 혹은 변호인이 조사를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민원인이 민원 혐의와 관련된 자료 및 기타 증거를 교육구의 조사원에게 제공하길 거부한 경우, 조사에 협조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조사에 방해 요소가 생긴 경우에는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 부족으로 민원이 기각될 수 있다. 유사하게, 피 민원인이 민원 혐의와 관련된 자료 및 기타 증거를 교육구의 조사원에게 제공하길 거부한 경우, 조사에 협조하지 못하거나 거부한 경우, 조사에 방해 요소가 생긴 경우에는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위반 발생 사실과 민원인에게 유리한 해결방안 시행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5 CCR 4631)

법에 따라 교육구는 준법 감시인이 민원 혐의와 관련된 기록 및 기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든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조사에 대해 교육구가 협조하지 않거나 거부한 경우에는 수집된 증거에 근거하여 위반 발생 사실과 민원인에게 유리한 해결방안 시행으로 결론이 날 수 있다. (5 CCR 4621)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최종 결론 일정

연장에 대한 민원인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교육구에 민원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최종 결론을 전달해야 한다. 민원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아래의 "최종 서면 결론" 섹션에 명시된 바와 같이 준법 감시인은 서면 보고서를 준비하여 민원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민원인이 준법 감시인의 결론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민원인은 5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위원회 정기 회의에서 혹은 민원 관련 답변을 해야 하는 60일 제한 시간을 충족하기 위해 소집된 위원회 특별 회의에서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법에 따라 요구된 경우, 문제는 미공개 회의로 다루어져야 한다. 준법 감시인이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경우, 위원회는 민원인의 심리를 열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가 민원인의 심리를 여는 경우, 준법 감시인은 교육구에 민원이 최초로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혹은 민원인과 서면 합의를 한 특정 기간 이내에 민원인에게 위원회의 결론을 전달해야 한다. (5 CCR 4631)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 혐의 관련 민원의 경우, 피 민원인은 민원인과 합의한 연장된 일정에 대해 통지받아야 하며,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론을 전달받아야 하고, 민원인과 마찬가지로, 결론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최종 서면 결론

모든 민원에는 교육구의 최종 서면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5 CCR 4631)

1. 수집된 증거에 근거한 사실 결과. 사실에 기반을 둔 결론에 도달할 때,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a. 목격자 진술

b. 관련인의 상대적 신뢰도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 c. 민원 제기인의 사건에 대한 반응
- d. 혐의가 제기된 행위와 관련된 기록 혹은 기타 증거
- e. 혐의가 제기된 피 민원인의 행위와 유사한 과거 사례
- f. 민원인의 과거 거짓 주장

2. 법률 결론

3. 민원 처리

4. 민원 처리에 대한 근거

보복 혹은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 관련 민원의 경우, 민원 처리는 보복 혹은 불법 차별이 발생했는지를 각각의 혐의에 대한 결정을 포함해야 한다.

적대적인 환경이었는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a. 위법 행위가 한 명 이상의 학생 교육에 영향을 끼친 경우
- b. 위법 행위의 유형, 빈번함, 지속 기간
- c. 피해 주장인과 가해자의 관계
- d. 행위에 개입한 사람의 수와 누구에게 가해진 행위인가
- e. 학교 규모, 사건이 발생한 장소, 사건 발생 경위
- f. 타학생이 연루된 학교에서 발생한 기타 사건

5. 교육비와 관련된 민원을 포함하여 민원 혐의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 혹은 앞으로 취해질 조치를 포함하는 시정 조치, 즉 교육법 49013 및 5 CCR 4600에 적합한 해결방안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 관련 민원의 경우, 법률에 규정된 바와 같이 안내문에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a. 피 민원인에게 가해진 시정 조치

b. 민원의 대상인 민원인 혹은 타인에게 제시되거나 제공된 개별적인 해결방안. 단, 본 정보는 피 민원인과 공유해서는 안 된다.

c. 적대적인 환경을 없애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학교가 취할 체계적인 방안

6. 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교육구의 결론에 항소할 민원인 및 피 민원인의 권리와 항소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절차

또한 해당 결론은 재발 혹은 보복을 방지하고 차후에 발생할 문제를 보고하기 위해 후속 절차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교육구의 변호인과 협의하여 당사자의 비밀 정보가 보장되는 이상 결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보는 민원인이 아닌 피해자 및 결론을 시행하는데 관련되거나 민원에 영향을 받는 기타 당사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 혐의 관련 민원의 경우, 피해 주장인에 대한 교육구의 결론 안내문은 피해 주장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피 민원인에게 가해지는 제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영어 구사력이 낮은 학생 혹은 학부모/보호자가 민원에 관련된 경우 및 15퍼센트 이상의 학생이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학교에 연루된 학생이 재학 중인 경우, 교육법 48985에 의하여 최종 결론은 해당 언어로 번역되어야 한다. 다른 모든 경우에, 교육구는 영어 구사력이 낮은 학부모/보호자가 모든 관련 정보에 유의미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주 법에 근거하여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 혐의 관련 민원의 경우, 민원인에게 보내는 최종 결론에 다음의 안내를 포함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 a. 민원인은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항소 신청 후 60일 이내에 중재 센터 혹은 공익/사익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포함하여 교육구의 민원 절차 외에 민법 해결책을 진행할 수 있다. (교육법 262.3)
- b. 60일의 유예 기간은 주 법원에서 금지 명령 구제를 요구하는 민원 혹은 연방법에 근거한 차별 민원에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법 262.3)
- c. 또한 인종, 피부색, 국적, 성별, 성 역할, 장애, 나이에 근거한 차별 혐의 관련 민원은 차별이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교육부의 인권 사무소 www.ed.gov/ocr로 제기할 수 있다.

시정조치

민원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준법 감시인은 법률이 허용하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더 큰 학교에 초점을 둔 적절한 시정조치 혹은 교육구 환경은 교육구 정책을 강화 및 전교직원, 직원, 학생 훈련, 학교 정책 개정, 학교 분위기 관련 설문조사 등과 같은 조치를 포함할 수 있다.

보복 혹은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이 연관된 민원의 경우, 피해자에게는 제공하되 피 민원인에게는 전달하지 않는 적절한 해결방안이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 상담
2. 학업 지원
3. 의료 서비스
4. 피해자가 교내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경호원 배치
5. 이용할 수 있는 자원 정보 및 유사한 사건 및 보복 신고 방법
6.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경우, 연루된 사람으로부터 피해자 분리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7. 회복적 사법

8. 차별 등의 행위가 없고 보복 행위가 없다고 보장하는 추후 조사

보복 혹은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이 연관된 민원의 경우, 가해 학생에게 초점을 맞춘 시정조치가 다음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교실 변경 혹은 전학
2. 학부모/보호자 상담
3. 타학생에 영향을 준 행동 관련 교육
4. 긍정적 행동 지원
5. 학생 성공 지원팀(SST) 보내기
6.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과 후 혹은 과외 활동 및 특혜 활동 참여 거부
7.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학 혹은 퇴학 등의 징계 조치

직원이 보복 혹은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을 저지른 사실이 발각된 경우, 교육구는 해당 법률과 노사 단체 협약에 따라 최대 해고에 해당하는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교육구는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로 여겨지는 유형의 행동과 교육구가 불법 차별 행동을 용인하지 않는 점, 불법 차별 행동 신고와 대응 방식을 학생, 직원, 학부모/보호자가 이해하도록 훈련 및 대규모 학교 공동체의 중재를 고려할 수 있다.

민원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적절 해결방안이 민원인 혹은 기타 영향을 받은 사람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교육비, 예치금, 기타 부과금, 체육수업 강의를, 자치 책무 운영 계획안과 관련된 요건을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준수하지 않은 혐의 관련 민원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교육구는 주 교육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절차의 대상이 되는 영향을 받은 모든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해결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1223, 52075)

교육비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 관련 민원의 경우, 교육구는 민원 제기 이전 일 년 이내에 부당하게 교육비를 납부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를 확인하여 전액을 배상하도록 합리적 노력을 통해 충실히 시도해야 한다. (교육법 49013; 5 CCR 4600)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항소

UCP가 명시된 연방 혹은 주 교육 프로그램 관련 민원에 대한 교육구의 최종 서면 판결에 만족하지 않은 민원인은 교육구의 최종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5 CCR 4632)

민원인은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 근거와 어떤 식으로 교육구의 판결이 그릇되거나 법이 부정하게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항소는 지역 민원 사본 및 해당 민원에 대한 교육구의 판결 사본을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보내야 한다. (5 CCR 4632)

(차별적 괴롭힘, 협박, 집단 괴롭힘과 같은) 불법 차별 혐의에 대한 피 민원인이 교육구의 최종 서면 판결에 만족하지 않은 경우, 민원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교육구의 최종 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를 캘리포니아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즉시, 교육감 혹은 지명인은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다음의 서류를 전달해야 한다. (5 CCR 4633)

1. 민원 원본 사본
2. 서면 판결 사본
3.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교육구가 실시한 조사의 유형 및 규모에 대한 요약본
4. 당사자가 제출했거나 조사원이 수집한 모든 메모, 면담, 서류 등을 포함한 조사 파일 사본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5. 민원을 해결하도록 취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
6. 교육구의 통합 민원 절차 사본
7. 캘리포니아 교육부가 요청한 기타 관련 정보

캘리포니아주 어린이집 프로그램에서 건강 및 안전 민원

면허를 면제받은 캘리포니아주 어린이집 프로그램(CSPP) 학급의 경우, 보건 안전법 1596.7925에 따라 CSPP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규정 5장의 보건 안전 요건과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혐의 관련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신청서를 구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해 학부모/보호자, 학생 및 교사에게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해야 한다. (교육법 8235.5)

면허를 면제받은 CSPP 프로그램에서 명시된 건강 및 안전 문제 관련 민원은 어린이집 프로그램 관리자 혹은 지명인에게 제기해야 하며, 익명으로 제기할 수 있다. 민원 신청서에는 민원 제기 장소를 명시하고, 민원인이 민원에 대한 답변을 원하는가를 표시하는 칸을 포함해야 한다. 민원이 어린이집 관리자의 권한을 넘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제를 적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감 혹은 교육감 지명인에게 10일 이내에 문제를 전달해야 한다.

면허를 면제받은 CSPP 프로그램에서 건강 및 안전 문제 관련 민원 조사는 민원 제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작해야 한다. (교육법 5235.5)

어린이집 관리자 혹은 지명인은 민원을 받은 날로부터 근무일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유효한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 답변을 받길 원한다고 명시한 경우, 어린이집 관리자 혹은 교육감 지명인은 민원이 최초로 제기된 날로부터 근무일 45일 이내에 민원인에게 민원 관련 답변을 전달해야 한다. 어린이집 관리자가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교육감 혹은 지명인에게 동일한 보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원인이 민원 해결 방안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민원인은 정기 회의에서 교육위원회에 민원을 설명할 권리가 있다.

민원인은 5 CCR 4632에 따라 캘리포니아 교육부에 교육구의 최종 결론에 대한 서면 항소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소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공동체 관계

통합 민원 절차

분기별로 교육감 및 지명인은 정기 이사회의 위원회와 교육감에게 해결된 민원과 해결되지 않은 민원 건수와 더불어 문제 유형에 따른 민원 건수를 포함하여 모든 CSPP 건강 및 안전 민원 유형과 해결 방안을 요약한 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규정 승인일: 1985년 8월

규정 개정일: 1991년 7월 16일; 1992년 11월 3일; 1997년 10월 7일; 2002년 12월 17일;
2006년 6월 27일; 2007년 11월 16일; 2010년 8월 24일; 2011년 10월 24일;
2014년 1월 30일; 2014년 5월 6일; 2016년 11월 18일; 2017년 9월 1일;
2018년 2월 6일; 2018년 5월 21일; 2019년 6월 7일; 2020년 7월 17일;